

의안 번호	2512	[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(안)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1. 11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1. 11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8.(월)

2. 제안이유

- 현 청사의 노후 및 향후 공간 협소 해소를 위한 신청사 등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 조성액 현황

(단위 : 천원)

2025년도 말 조성액	2026년도 조성계획			2026년도 말 조성액
	수 입	지 출	증 감	
14,257,969	842,470	5,400,000	△4,557,530	9,700,439

나. 2026년 자금운용계획

- 수입계획: 15,100,439천원
 - 이자수입(322,470), 매각수입(520,000), 예치금 회수(14,257,969)
- 지출계획: 15,100,439천원
 - 비융자성사업비(5,400,000) ※ 반구1동행정복지센터 건축비용으로 지출
 - 예치금(9,700,439) ※ 정기예금으로 예치

4. 근거법령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5조

다. 「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2조, 제3조, 제4조

5. 검토의견

- 본 기금 운용계획 안은 현 청사의 노후 및 향후 공간 협소 해소를 위한 신청사 등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근거법규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

- 제5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1.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·관·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 2.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·부문·정책사업·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 2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2조(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) ①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 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 전출금
2. 국, 공유재산 매각대금
3. 지방채 발행
4. 울산광역시 보조금
5.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
6. 그 밖의 수익금

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.

1. 신청사 부지 매입비
2. 신청사 건축비
3. 그 밖의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제 경비
4. 청사 증축비 및 관련된 제 경비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“이라 한다)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